

e-Postbank 정기예금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e-Postbank정기예금(이하 “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,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우체국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이다.

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인 다계좌 가입이 가능하다.

제4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월단위,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【가입금액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,000만원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.

제6조 【기본금리】

기본금리는 신규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.

제7조 【우대금리】

- ①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.
- ② 인터넷뱅킹 우대금리 : 신규가입일 현재 기간별 우체국장 우대금리 적용
- ③ 다음 각호에 해당 시에 항목당 우대금리 적용
 1. 우체국 인터넷 판매상품^{주1} 기가입 또는 예금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 가입하고 예치기간동안 정상계좌 유지시 연 0.2%p

※ 주1 : 판매중인 상품 5종 : e-Postbank예금,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, 인터넷 가계우대정기적금, 인터넷 웰빙우대저축예금, 인터넷 틈뎡우대저축예금

 2. 예금 가입당시 우체국계좌 자동이체약정이 2건 이상 연 0.2%p
- ④ 우대금리는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.

제8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- ①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- ② 만기해지는 가입당시 정한 이율을 적용하고 중도해지, 만기후해지, 분할해지는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한다.

제9조 【이자계산】

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(예치일수/365)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,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.

제10조 【분할해지】

- ① 최초 가입액의 90% 범위안에서 2회까지(만기포함 3회)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, 이 경우 분할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분할해지는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며 최소 1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 【가입 및 해지】

- ①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며,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등록된 출금계좌(이하 “모계좌”라 한다)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.(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“보안등급별 이용한도액 및 이용수단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)
- ② 해지시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된다.

제12조 【과세부분】

일반과세, 생계형,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다

부 칙

- ① 이 특약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단 제9조(이자계산)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< 신규대조문 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조(특약의 적용) e-Postbank정기예금(이하 “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,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	<u>제1조(적용범위)</u> 좌동	
제3조(가입대상)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1인 다계좌가 가능하다.	제3조(가입대상) ----- ----- <u>가입이</u> <u>가능하다</u>	용어정리
제7조(우대금리) ③ 다음 각호에 해당 시에 항목당 우대금리 적용 1. <u>우체국 인터넷 판매상품주1</u> 가입 또는 예금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 가입하고 예치기간동안 정상계좌 유지시 연 0.2% 2. 예금 가입당시 우체국계좌 자동이체약정이 2건 이상 연 0.2%	제7조(우대금리) ③ 다음 각호에 해당 시에 항목당 우대금리 적용 1. <u>우체국 인터넷 판매상품^{주1}</u> ----- ----- <u>연</u> <u>0.2%p</u> 2. ----- ----- <u>연 0.2%p</u>	용어정리
제9조 (이자계산)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,	제9조 (이자계산) ----- <u>예</u> <u>치기간(예치일수/365)</u> -----	상품정비 반 영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.	----- -----.	
제12조 (과세부분) 일반과세 가입만 가능하다	제12조 (과세부분) <u>일반과세, 생계형, 세금우대로 가입이</u> <u>가능하다</u>	상품정비 반 영
	부 칙 ① 이 특약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단 제9조(이자계산)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	